

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- 제 출 : 2007. 1. 12.(사천시장)
- 회 부 : 2007. 1. 12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4호)
- 상 정 : 2007. 1. 23.(제11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총무과장 엄정기)

가 제안이유

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.

나 주요내용

- 1)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3조)
- 2)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평생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사천시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둔(안 제3조)
- 3) 평생학습 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 위원은 시의원, 학계, 법조계, 사회단체, 평생교육관련 단체장, 시청 및 교육청 평생학습 관계공무원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함(안 제6조)
- 4)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 확대 제공 및 평생학습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사천시에 사천시평생학습센터를 설치·운영함(안 제10조)

다 관계법령

- 「평생교육법」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균호)

- 본 조례안은 「평생교육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 평생학습 진

홍을 도모하고, 평생학습이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

- 평생학습추진위원회 및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등의 내용을 심의 의결하고, 평생학습 지원체제에 관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,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려는 것으로
-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·재정적 지원 근거와 평생학습도시의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